

이란의 政治体制와 특징

I. 支配体制

1. 3 권분립의 현상

(1) 司法府

사법부의 최고사법권자는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제정과 함께 호메이니翁에게 그 임명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혁명초기부터 지방의 유력한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혁명재판소가 형성되었다.

IRP(이슬람 공화당)가 3 권을 장악한 후, 이것들을 통폐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완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호메이니翁은 1982년 여름에 민법·상법·형법의 이슬람화를 지시하였으나, 형법을 제외하고는 아직 현실화된 법제정은 없다.

(2) 立法府

입법부는 국회와 헌법옹호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옹호평의회는 국회의 입법을 감시하고, 이슬람법이나 헌법에 위배된 입법을 반송할 권리가 있다.

국회는 제 1기에 IRP가 주도권을 쥐었다. 1984년의 제 2기 선거시에 IRP는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펴지 않아 270개 의석중 110석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입후보자는 내무성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IRP의 통치이념에 이론을 가진 자는 입후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옹호평의회는 일반법학자와 이슬람 법학자 각 6명으로 구성되며, 이슬람 법학자는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翁이 임명권을 쥐고 있어서 모든 입법은

이슬람법의 관점에서 검토되게 되어 있다.

(3) 行政府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 대신에 새로운 독재자를 낳게 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되어 행정부의 권한은 헌법상, 입법·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수상 선출권이 주체이나 이것도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각은 이러한 대통령 밑에서 더욱 힘이 약한 입장이며, 국회와 호메이니翁에 직속한 혁명제조직의 제약을 받고 있다. 혁명제조직은 그 일부가 행정부에 흡수되었으나, 아직도 호메이니翁의 직속하에서 행정부에 대해 반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統治理念과 최고 지도자, 추진기관

현 지배체제의 통치이념은 호메이니翁의 베라야지·화기論이다. 그 취지는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이념하에서 이슬람법을 완전 시행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이슬람 법학자의 역할을 겨냥한 것이 최고지도자이며, 호메이니翁이 평생 이 지위에 서도록 되어 있다.

그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과 그렇지 않은(주로 종교적 구성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은 군최고 사령관으로서의 권한과, 사법·입법 양부의 요직자 임명권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으로서의 제조직에 대한 호메이니翁 대리임명권, 혁명조직의 책임자 임명권, 그리고 주요도시의 금요 예배 주도자 임명권이 있다. 또한, 이슬람의 제 2차규범에 관한 자유재량권, 즉 사회경제제도의 변혁을 지시할 권한

을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이라크의 종교지도자로서 이라크 바스黨 정권에 의해 처형된 바켈 사들翁의 이론에 의거한 것으로 라프산자니 국회의장등 개혁파인 이슬람 법학자에 의해 지받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 보수파는 이에 저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체내에서 공인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호메이니翁은 이 권한의 행사를 주지하여 농지재분배 법안 문제를 국회에 위양하고 있다. 이 베라야치 화기論에 의한 통치이념의 구현화를 겨냥하여 지배체제수립을 추진한 기관으로서 IRP와 혁명조직, 그리고 헤즈보라 히를 들 수 있다. 단, IRP는 3권 장악후 이른바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있다.

혁명조직은 혁명 방위대등 군사치안활동을 취지로 한 조직과 순교자 재단등 사회봉사활동을 취지로 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종교세력은 카자르 왕조시대부터 일종의 私兵을 거느리고, 또한 병원경영등 사회봉사사업을 해왔다. 이 전통적인 종교권력기구가 국가적규모로 발전한 것이 혁명조직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헤즈 보라히는 호메이니翁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데모할 때에 자칭하는 것으로 공적 조직명은 아니다. 따라서 비공식적 지위를 이용하여 헤즈 보라히는 자주 비합법적인 실력행사를 政敵에 대해 해왔다. 최근에는 이란 자유운동본부를 습격한 바 있다.

3. 支配体制의 문제점과 특징

호메이니의 베라야치 화기論은 통치체도의 대강으로서 구체적 제도에 관하여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치체도는 갖추어지지 않은채 지배체제의 확립이 선행되었다. 신헌법제정도 혁명직후의 바자르간 잠정내각이 샤 시대의 헌법과 프랑스의 제5 공화국 제헌법을 바탕으로 원안을 작성하였으며, IRP의 중진과 작고한 베헤슈티翁이 가필수정을 하는 과정을 겪었다. 3권분립의 채용은 이 원안이 거의 답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배체제 확립후 약4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경제사회체도의 기반을 정하는 무역국유화 법안이나 농지 재분배법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법전의 이슬람화도 형법을 제외하고는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 선행된 지배체제의 확립과 통치체도의 격차는 몇가

지 현상을 낳고 있다. 하나는 항상 종교적 정열을 고무하고, 대중동원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배기구의 이중구조성이다. 이 이중구조성의 대표는 정규군과 혁명방위대이며, 상호 유사한 직무를 갖고 있다. 결국, 왕권하에서 발전해온 군과 행정 관료기구, 전통적인 종교권력기구가 발전한 혁명조직이 호메이니翁 하에서 양립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또다른 문제는 테크노크라트 기용의 필요성과 피동원자층간의 모순이다. 피동원자층은 신앙심이 깊지만, 서구적인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지원에 따라 현지배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국가의 원활한 운영이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자 테크노크라트의 기용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지의 피동원자층을 우대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고 있다. 또한,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그 계승제도에 관해서도 다소 유동적인 상태이다. 평생 보증된 호메이니翁의 사후에는 최고지도자의 파면권을 지닌 후계자 선정 전문가 회의의 권한이 새로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래의 종교권위에 정치적 권위가 추가된 것은 전통적인 종교계의 제도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상급종교지도자(아야톨라)가 연립한 경우, 최고령자인 마르자·에·타리드가 단일 아야톨라로서 종교계의 최고권위자가 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호메이니翁과 다른 상급종교지도자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관행이 현재체하에서 유지될 것 같지 않다.

사실, 1985년 11월에 이 관행을 무시한 형태로 호메이니 학벌의 몬타제리翁이 자기 최고지도자가 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발표형식은 이례적인 형태를 취했다. 정부중앙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 가르빈의 금요일배주도자(후계자 선정 전문가회의멤버)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 발표가 있는지 수일후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은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필요한 서명을 받지 못하고 호메이니翁 및 몬타제리翁에게 정식 통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몬타제리翁을 후계자로 기정 사실화 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종래의 전통적인 종교체도의 관습 이탈에 대해서 일부 후계자 선정 전문가 회의멤버를 비롯하여

종교계에서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현지배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현지배체제는 16세기 이래의 시아派 종교세력의 발흥 과정 선상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아직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현지배체제의 안전성 여부를 생각할 경우, 이 생명력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고 해도 외적 환경에 따라서 요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이란 현체제의 屬性

1. 이란의 국민성

이란의 국민성을 특징짓는 것으로서는 문화적인 긍지, 강한 피해자 의식(피해 망상)과 시의심, 책임전가, 좋은 기풍과 주관적인 청결심, 자의식이 강하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란인의 이러한 국민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자헤르와 바텐」이라는 그들의 의식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자헤르」는 「밖에있는 썩 또는 타락」을 의미하고, 「바텐」은 「안에있는 썩, 또는 순수성, 무구성」을 의미한다.

이 「안의 선과 밖의 악」이라는 생각은 이슬람 시아派의 사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의미 외에 심원한 「안(내부)」의 의미, 즉 매우 뜻이 깊은 예언자 무하마드로부터 이맘 알리, 그리고 그의 자손 이맘들에게 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고대 페르샤·조로 아스터敎의 善惡 이원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의식은 고대로부터 이란인의 국민성에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밖(외부)」에는 악이나 모략이 소용돌이치고, 틈만 있으면 이 밖에 있는 악과 타락이 「안」에 있는 썩이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한다고 보는 강박관념은 그들에게 강한 시의심을 품게 하였다. 또한 나쁜 사태는 모두 밖에 있는 썩에 기인하고, 자기 즉 「안」에 있는 썩 또는 무구성은 그 피해자라고, 모든 견해는 책임전가와 피해망상적 언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것이 높은 프라이드 의식을 불러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과 「안」의 경계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있어서의 외면과 내면, 사회에 있어서의 타인과 자기, 다른 가족과 자기가족, 외국과 자국, 기타 민족단위, 시아派 또는 이슬람과 같은 종파나 종교단위등이다. 팔레비 왕조 시대에 이 「밖」과 「안」의 의식을 발현시키는 단위는 샤(지배자)가 종교단위의 그것을 억제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개인단위, 국가단위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혁명후의 현체제에서는 이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호메이니翁을 지도자로 하는 현체제는 서양문화에 의한 이슬람의 위기의를 기조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체제는 이슬람을 단위로 하는 「안」과 「밖」의 의식을 강하게 보인 반면, 국가를 단위로 하는 의식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단위의 의식발현도 억제되어 이슬람의 「안」에서의 단결과 상호협조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이슬람을 단위로 하는 「안에서의 善과 밖에서의 惡」의 구도속에서 「안」의 신은 이슬람, 「밖」의 악은 서양문화가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 서양문화는 동서양진영의 서방측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와 더불어 공산주의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문화의 대표자로서 美國이 대악마로 불리우고 있다.

이것은 팔레비 왕조와 이슬람 종교세력을 사멸의 위기에 빠뜨리고, 서양화 정책을 적극화시키는 계기가 된 白色革命의 배후에 美國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본격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전쟁 당초부터 「밖」의 惡의 근원인 美國이 「안」의 善인 이란과 이슬람 혁명을 붕괴시키기 위해 이라크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고 이란의 현체제는 보고 있다. 한편, 호메이니翁에게 반감을 지닌 일부 중산층에서는 이 「안에 있는 善과 밖에 있는 惡」의 의식이 복잡하게 뒤엉킨 발상을 하고 있다. 즉, 「밖」의 惡인 美國이 호메이니翁을 이란에 들여보내 「안」의 善인 그들의 생활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시아派의 특징

시아파가 지닌 특징은 상호 동떨어진 행동을 초래한 양면성에 있다. 일면은 권력에 대한 복종성이며, 다른 면은 권력에 대한 투쟁성이다. 시아派는 하리派의 이슬람 공동체 지도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예언자 무하마

드의 사위 아리의 家系에 공동체 지도권의 정통인 계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아리」家系의 계승권 소유자를 「이맘」이라고 부른다.

제3대 「이맘」에 해당하는 「후세인」은 한때 패권을 쥔 우마이야 王朝의 압정에 봉기하여 불과 72명의 병사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의 정의를 위해 순직했다. 그후, 아리의 혈통을 이은 이맘은 9세기의 12대 이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12대 이맘은 연소하여 실종하게 된다. 결국, 이맘·아리를 제외하고 혼자서 실제의 공동체 지도권을 지닌 자 없이 그 후계자는 끊어졌다. 그러나, 시아派는 제12대 이맘이 서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습을 감추었을 뿐이며, 말세에는 재림하여 구제할 것으로 믿고 있다.

여기서 시아派를 구성하는 두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맘·후세인의 순교이며, 다른 하나는 제12대 이맘에 의한 구제이다. 이 두가지 구성요소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시아派는 동떨어진 두가지 행동양식을 갖게 된다.

제12대 이맘의 재래와 구제를 중시하면 현세에서의 압정이나 타락, 그에 의한 곤경도 참고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신앙을 숨기는 것도 타당하게 된다. 이것은 권력자에 대한 아첨이나 영합은 당연하면, 더우기 부패를 충만시키는 것이 제12대 이맘의 재래를 재촉하게 된다고 극단론을 펴고 있다.

한편,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중시한다는 것은 압정이나 부정, 부패 타락에 반항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맘 후세인의 삶의 방식과 죽음의 방식을 모델로 하는 것이 신도의 증표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적 투쟁으로 신도를 이끄는 것이다. 일련의 시아派 교도들의 자살 행위에 의한 테러 활동은 이러한 종교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 법학자의 권력은 19세기 카자르 왕조시대의 금연운동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권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 법학자의 자세는 왕권을 견제하는 감찰관이며, 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자세는 권력에 대한 순수한 투쟁은 아니었다.

호메이니翁도 당초, 왕권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 팔레비 왕조를 비난하면서도 왕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白色革命을 계기로 石油

매수입을 둘러싸고 서양화정책을 쓴 왕권과 종교권력이 사투를 벌이는 단계에 이르자 호메이니翁은 베라야치 화기論을 주창하며 왕제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견제역에서 투쟁역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현체제는 베라야치 화기論과 호메이니翁을 각각 지도원론과 지도자로 삼고 있다. 이것은 현체제가 시아파가 지닌 양면성중 투쟁 측면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보면, 현체제의 속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호메이니翁을 지도자로 하는 현체제는 서양문화에 의한 이슬람의 위기의식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에 이슬람을 단위로 한 「안」의 善과 「밖」의 惡이라는 의식을 발현시켜 「안」에서는 非理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와 단결을 주장하는 한편, 「밖」에 있는 惡에 대해서는 강한 투쟁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 이러한 속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 政策결정과정의 사례

(1) 戰爭의 기본방침 결정사례

이란이 호람사하르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점령지에서 자주적으로 철수하여 평화를 요청한 1982년 여름, 이란은 휴전이나 역침공이나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이때, 최고국방평의회 내에는 역침공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었다. 반대파는 행정부 수뇌인 하메네이 대통령과 무사위수상, 그리고 직업군인이며, 역침공파는 혁명방위대 사령관과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이었다. 그러나, 호메이니翁은 최고국방평의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채 전쟁계속을 결정하였다.

이 후에도 이란은 몇번인가 終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1983년 봄과 84년 봄이었다. 1983년 봄, 신5개년계획 실시년도를 앞두고 최종결정을 겨냥한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후 이란은 경제건설과 전쟁수행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자 1984년봄 다시 대공세를 폈다. 그러나, 이 대공세도 실패로 끝나자 과거의 역침공파였던 라프산자니도 새로이 점령한 마지막 섬을 조건으로 평화교섭에 나설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호메이니翁은 이 전쟁이 신도와 비신도간의 싸움으로 영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움직임을

배격하였다. 이후 이란은 열세에 놓이게 되었으며, 유조선 공격에서 테헤란 폭격으로 전국은 악화되었다. 이 중에서 종교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전쟁수행에 의문을 품고 공격하는 싸움은 이슬람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그러나, 호메이니翁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수호하는 싸움이라고 보고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서의 의견 대립이나 수뇌부의 동요를 엿볼 수 있으나 호메이니翁의 자세는 시종일관 변함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 外交방침의 결정과정 사례

1984년 가을, 이란은 적극적인 외교방침을 결정하고, 사우디 아라비아등 종래 적대시해온 연안제국이나 서구 제국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1984년봄의 대공세가 좌절된 이래, 이란은 종래의 인해전술형 육상공격에 의한 승리의 가능성을 잃고, 이라크의 유조선 공격개시에 의해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섰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결정되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행정부는 여름서부터 이 방침을 주장해 왔으나, 혁명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강경파에 의한 저항의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에 있어서의 사우디 항공기 공격미수사건이 있다. 1984년 7월말, 사전에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스페인 당국은 혁명조직(순교자 재단)의 수명의 이란인을 체포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스페인 휴양지에 있었던 사우디 황태자를 겨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84년 가을 일부 지역에서 한 정된 군사작전을 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 작전은 종래의 혁명방위대가 특의에 찬 맹공전술과는 달리 직업군인의 전문지식을 살린 합리적인 작전이었다. 이 전과를 계기로 하여 호메이니翁은 혁명제조직의 강경의견을 물리치고 적극적인 외교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는 국내의 의견대립에 대하여 호메이니翁은 여하간 실적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형태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3) 内政에 관한 정책 결정사례

혁명과 함께 농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

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인 재분배법안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종래의 소유상한을 생계유지의 3 배까지로 하고, 잉여농지의 접수에 대해서는 보증이 애매하였다. 호메이니翁은 그 문하생인 종교지도자 3 명으로 하여금 이슬람법의 관점에서 검토케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1980년 4 월의 일이다. 그러나, 중류상업농가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일부 종교지도자들도 동조하자 호메이니翁은 중지명령을 내렸다(같은해 11 월).

이 숨막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종래 최고지도자의 권한에 속했던 경제사회제도 변혁의 권한을 공개서한의 형태로 국회에 위양할 것을 호메이니翁에게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 권한위양에 따라, 국회는 보다 보수적으로 후퇴한 재배분법안을 만들었다. 잉여농지의 임차를 인정하는 형태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옹호평의회는 이 법안도 비이슬람적이라고 기각하였다. 이후, 농지재분배 문제는 평의회와 국회사이에서 공중에 뜨고 말았다. 그러나, 평의회 이슬람 법학자의 임명권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翁에 있으며, 호메이니翁이 권한을 국회에 위양하여도 최종 결정권은 호메이니翁에게 되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대립에 대해 호메이니翁이 스스로 결정내리기를 회피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상 전쟁, 외교, 내정등 세가지 사례를 살펴 보았으나, 공통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국내에서의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것과, 최종결정은 호메이니翁이 했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각기에 대한 호메이니翁의 자세는 분명히 다르다. 전쟁에 관해서는 명백한 자세를 취하고,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물리쳐 왔으나, 내정면에서는 의견대립에 대해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결정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외교면에서는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의견대립에 대하여 중재형태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현체제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체제는 서양문화에 의한 이슬람의 위기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에 이슬람을 단위로한「안」

의 옳과 「밖」의 옳이라는 의식과 밖의 악에 대한 투쟁성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의 적으로 판정한 이라크의 바스黨 체제에는 명확한 투쟁자세를 표명하는 반면, 「안」의 옳에 해당하는 내정에 관해서는 근원적인 모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의견대립을 배제하여 협조와 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밖」이라고 해도 외교분야는 옳으로 보지 않는 다소 애매한 면도 있다.

물론 이 속성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위의 세가지 사례에서도 다음과 같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가지 사례의 결정권에 있어서 호메이니翁의 권한에는 차이가 있다. 전쟁문제는 최고 군사령관으로서 그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그 권한은 명확하다. 그러나, 내정 특히 경제사회 문제에 관해서는 바켈 사도르翁의 논리에 따라 최고 지도자에게 자유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현재 체제내에서 공인되고 있지 않아 이 권한은 애매한 상태이다. 또한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행정부의 담당분야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부의 권한은 약하며, 국회나 혁명 제조조직이 이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메이니翁은 중재의 형태로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1985년 가을의 무사위수상의 재선정문제도 들 수 있다. 수상 선출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최고지도자 호메이니翁에게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에 재선된 하메네이가 무사위 수상을 낙선시키려는 움직임을 취하자 국회내에서 저항이 생겨 호메이니翁은 중재형태로 사실상의 선임권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행정부의 힘은 약하고, 국회나 혁명제조조직이 이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호메이니翁은 행정부의 결정권을 중재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Ⅲ. 맺는 말

과연 호메이니翁이 사망하면 현재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선, 현재제는 인맥면에서 보면 호메이니 학벌이 현지배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호메이니翁

이 사망하여도 이 호메이니 학벌은 남는다. 결국 이것은 베라야치 화기論을 지도원론으로 하는 체제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권력투쟁이 일어나더라도 호메이니 학벌내의, 이른바 체제내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호메이니翁의 문하생이 종전의 기본방침을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 단, 후계자 후보인 몬타제리翁은 전쟁 계속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력자인 라프산자니翁도 실용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호메이니翁 만큼 전쟁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로서는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호메이니翁 사망시에도 후계자의 권한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이다. 호메이니 학벌내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공적 싸움 형태로 전쟁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것은 호메이니翁이 현시점의 상황하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호메이니翁이 더 장수할 경우는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건국되었다. 건국시조 이븐 사우드는 아라비아의 제부족으로 이프완 전사단을 만들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건국하였다(1932년). 이 이프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이슬람 순니파에서 나온 와하브파의 원리주의와 전리품 획득이라는 물질적 욕구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건국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추구하였고, 아울러 대산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일원이 됨에 따라 이 두가지 중심원리는 어쩔 수 없이 변질되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븐·사우드 국왕에 의한 이프완의 탄압사건이다. 국경지방의 英國 위임통치령을 침공하려는 이프완을 이븐·사우드 스스로가 사라바 전투(1929년)로 탄압한 사건이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일어났으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지혜에 따라 활동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란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야될 압력을 받고 있다. 이란이 앞으로 어떤 지혜를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 <쌍용정유, 주간석유에너지정보>